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1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제안이유

- 부천시에는 여성회관 2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의 운영을 위한 조례가 없어 체계적인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부천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 회관의 운영내용 및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행사업을 정함. (안 제6조)

-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수탁관리자의 의무사항 및 감독 규정을 정함으로써 수탁업무의 효율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그 밖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조례안 중 시설이용이나 사용료 등 세가지에 있어 시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시장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는지?</p> <p>○ 안 제14조에 보면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수시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지도감독이나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p>	<p>○ 시설이용이나 사용료 등에서 시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것은 이와 관련 많은 개별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는 없음.</p> <p>○ 현재 문화재단 운영전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탁시설로 바뀔 경우 지도감독이나 수시감사는 하지만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인적사항이나 신상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있어 어려울 것으로 봄.</p>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가 만들어 지게되면 여성회관을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인지? ○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위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위탁하게 되는 것인지? ○ 민간위탁하게 되면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여성관련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 현재 여성회관이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 소관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 다른 기관으로 위탁하게 되면 현재 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며, 문화재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 조례대로 하면 민간위탁시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이 들어오면 한 건물에 두개 기관이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 여성회관이 문화재단 대상사업으로만 되어 있고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만들려는 것임. ○ 민간위탁으로 되면 다시 별도로 위탁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봄. ○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위탁될 수도 있음. ○ 예산을 받는 출연기관으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봄. ○ 다른 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은 원칙론적인 사항이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 특수성을 부여하여 제한적인 공모를 통해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봄. ○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77호
의결 연월일	2006. 1. 20 (제124회)

제안년월일 : 2006년 1월 18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여성회관 시설의 이용자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자 규정에 있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한 것은 시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설 이용자나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자를 임의로 적용하는 등 조례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여성회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내용으로 조문을 수정.
- 소외계층의 폭 넓은 배려를 위해 여성회관 수행사업의 수강료 면제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세대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공부조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과 부자가정 세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2. 주요골자

- 여성회관 시설 이용자 및 사용료와 수강료 면제자 중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여성회관 설치·운영 목적과 부합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문으로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9조)
- 여성회관 수행사업의 수강료 면제자로 차상위 계층과 부자가정 세대를 포함.(안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2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안 제9조 제2항 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안 제9조 제3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한다.

안 제9조 제3항 제4호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자가정 세대”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 세대”로 한다.

안 제9조 제3항 제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안 제2조 별표 1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치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1”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2”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동일함.』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시설의 이용)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p>제9조(사용료 등)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생략) 1.-2. (생략) 3.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p>③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 2.-3. (생략) 4. <u>「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자 가정 세대</u> 5. (생략) 6.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여성회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명 칭</th> <th style="width: 50%;">위 치</th> <th style="width: 3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부천시 여성회관</td> <td>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td> <td></td> </tr> <tr> <td>부천여성청 소년센터</td> <td>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1</td> <td></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비 고	부천시 여성회관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부천여성청 소년센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1		<p>제7조(시설의 이용)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u>기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p>제9조(사용료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정안과 같음) 1.-2. (제정안과 같음) 3. <u>기타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p>③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u> 2.-3. (제정안과 같음) 4. <u>「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 세대</u> 5. (제정안과 같음) 6. <u>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u>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여성회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명 칭</th> <th style="width: 50%;">위 치</th> <th style="width: 3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부천시 여성회관</td> <td>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td> <td></td> </tr> <tr> <td>부천여성청 소년센터</td> <td>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2</td> <td></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비 고	부천시 여성회관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부천여성청 소년센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2	
명 칭	위 치	비 고																	
부천시 여성회관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부천여성청 소년센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1																		
명 칭	위 치	비 고																	
부천시 여성회관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부천여성청 소년센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2																		

[수정안 포함]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여성회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성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여성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시장은 여성회관 운영시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여성회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회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개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운영시간) 여성회관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능)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직업능력개발, 생활문화증진, 가족 기능 강화, 시민의식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상담사업 : 여성·가정의 문제예방, 해결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동아리 육성사업 : 지역여성단체,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지역사회발전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시설의 이용)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2. 기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제9조(사용료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료·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수강료는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 세대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6.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2. 시설사용 또는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3. 강의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분의 수강료를 반환

제11조(변상) ①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기타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12조(위탁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2. 기타 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여성회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①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2. 수탁관리자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성회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부천시 여성회관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2	